



보험회사 이자율 관련 공동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시사점

이승준 연구위원

요약

- 대법원은 이자율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피고)가 부과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명령을 취소해 달라면서 한화생명 등 9개 보험회사(원고)가 낸 소송에서 보험회사 이자율에 관한 단순한 정보교환 행위를 담합으로 볼 수 없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인정하고 원고의 승소를 확정
- 이는 이자율에 대한 보험회사들 간의 정보교환과 같은 사업자 간 동조적 행위(concerted practices)를 부당 공동행위를 위한 합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미 있는 판례로 향후 법적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보험회사 법규리스크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이번 판결을 계기로 향후 보험회사는 상호 정보교환을 상품 특성 상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특히 각자 보험가격 결정을 독자적으로 하였다는 근거를 확실하게 남겨 보험회사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에 대비하고 법규리스크를 낮출 필요가 있음.

- 지난 7월 28일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화생명 등 9개 보험회사가 낸 이자율 관련 부당 공동행위 혐의에 따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줌.
 - 이자율과 관련한 보험회사 간 정보교환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따른 부당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취소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함.
- 고등법원¹⁾은 지난 2013년 7월, 보험회사 간의 단순 정보교환 행위를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부당 공동행위로 볼 수 없고 교환된 정보를 참고하여 각 사가 이자율을 결정하였으며, 각 사의 이자율에도 뚜

렸한 외형적 일치 없이 담합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

-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제19조 (부당공동행위) 제1항에서 말하는 “합의”의 개념으로 단순 정보교환과 같은 사업자 간 동조적 행위(*concerted practices*)는 포함시킬 수 없으며 사업자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할 것 등을 합의해야 인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음.
-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심결²⁾에서 부당 공동행위 합의는 명시적 합의 뿐 아니라 묵시적 합의도 포함하며 정보교환도 시장상황, 정보종류에 따라 공동행위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생명보험회사의 정보교환과 이에 근거한 가격결정을 부당 공동행위로 판단하였음.
 - 16개 생명보험회사는 1998년부터 2006년까지 각종 회의를 통하여 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미래의 예정이율과 공시이율에 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이러한 정보를 반영하여 각 사의 이자율을 각자 결정하였음.
 - 이와 같은 보험회사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자율에 관한 부당 공동행위를 위한 보험회사 간 합의가 존재한 것으로 판단하고 16개 생명보험회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중 12개 생명보험회사에 총 3,63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의 판단을 가른 중요한 차이는 사업자들의 정보교환과 같은 동조적 행위를 공동행위를 위한 합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로 이는 사업자 간 묵시적 합의를 어디까지 인정할 지에 대한 판단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임.
 - 유럽 경쟁법 제101조³⁾제1항의 경우 경쟁을 제한하는 사업자 간 모든 합의, 사업자 협회의 결정 또는 동조적 행위를 불법으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담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공정거래법 제19조 제5항에 따른 합의의 추정⁴⁾은 시장 또는 상품 특성, 사업자간 접촉 횟수 및 양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부당 공동행위의 개연성이 상당한 때 인정될 수 있으나 사업자 간 정보교환 등 동조적 행위까지 이런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을 지는 의문임.

1) 서울고등법원 2013.7.17 2012누2346.

2) 공정거래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2011-284호, 2011.12.15.

3) EU 실행조약 제101조,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TEFU) article 101(1), ...all agreements between undertakings, decisions by associations of undertakings and *concerted practices* which may affect trade...

4) 추정이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간접적인 사실만 있는 경우 직접적인 사실이 있는 것으로 일단 정하여 그에 따라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함(공정거래위원회, 「공동행위 심사기준」,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65호, II-2 나. 합의의 추정).

- 공정거래위원회 예규인 「공동행위 심사기준」에서는 “직·간접적 의사연락이나 정보교환 등의 증거가 있는 경우⁵⁾” 부당 공동행위를 위한 합의 추정을 보강하는 정황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 즉,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부당 공동행위를 위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⁶⁾ 합의의 증거가 없는 경우, 사업자 간 정보교환 등에만 의존하여 부당 공동행위를 추정할 만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지는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리고 이번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취소 판결의 또 하나의 주요 근거는 각 보험회사가 교환된 정보를 반영하여 “각자의” 이자율을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각 사의 이자율에도 뚜렷한 외형적 일치가 없었다는 점임.
- 만약 이자율이 “공동으로” 결정되었을 경우 이는 명백한 부당 공동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설령 보험회사들이 이자율을 “각자” 결정하였더라도 각 사의 이자율이 외형상 일치하는 경우 전술한 정보교환이 합의 추정을 보강하는 정황증거가 되었을 수도 있음.
- 이번 대법원 판결은 법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향후 보험회사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에 따른 보험회사 법규리스크를 상당히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보험회사 간 의사연락 및 정보교환 등 동조적 행위 자체로는 공정거래법 상 부당 공동행위 성립을 위한 “합의”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고등법원 판결을 확정하였음.
 - 또한 보험회사들이 상호 정보교환을 하였더라도 이후 “각자” 독립적으로 이자율을 결정하고 그 결과 각 사 이자율에 차이가 있다면(또는 각 사 이자율에 뚜렷한 일치가 보이지 않는다면) 담합으로 인정할 수 없음.
- 이번 판결을 계기로 향후 보험회사는 상호 정보교환을 상품 특성 상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특히 각자 보험가격 결정을 독자적으로 하였다는 근거를 확실하게 남겨 보험회사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에 대비하고 법규리스크를 낮출 필요가 있음.
-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간의 단순한 정보교환은 보다 확실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담합 증거를 보강하는 정황증거로만 사용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제한된 행정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음. [kiri](#)

5) 예를 들어, 1) 해당 사업자 간 가격인상, 산출량 감축 등 비망록 기입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2) 모임을 갖거나 연락 등을 하고 이후 행동이 통일된 경우, 3) 특정 기업의 가격 등 결정을 위한 내부 업무보고 자료에 다른 경쟁기업의 가격 등에 대한 향후계획 등 쉽게 입수할 수 없는 비공개 자료가 포함된 경우, 4) 특정기업이 가격인상 등 의도를 밝히고 다른 경쟁기업들의 반응을 본 후 그에 따라 가격인상을 한 경우(공정거래위원회, 「공동행위 심사기준」,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65호, II-2 나. 합의의 추정).

6) 보험회사 이자율이 외형상 뚜렷하게 일치하는 경우, 부당 공동행위를 위한 묵시적 합의의 증거로 판단할 수도 있음.